

입 법 예 고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2026. 9.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축 산 유 통 팀)

1. 개정이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과태료 별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를 벌칙으로 강화하면서 과태료 규정이 변경(제34조 제1항 17호)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수정(안 제16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저목 위반행위란 저목 중 “않거나 거짓으로 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